



FTA TRADE REPORT

03

FTA ANALYSIS

원산지증명 간소화제도 주요 내용과 2024 신규지정품목 소개





원산지증명 간소화제도 주요 내용과 2024 신규지정품목 소개



이나현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1.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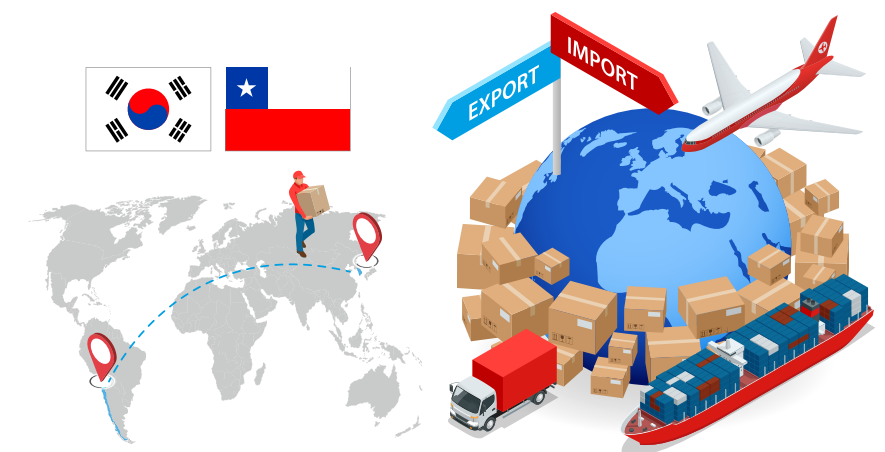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부터 복잡한 원산지증명 절차 및 방대한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 등의 문제는 FTA 활용 조기장착을 위해 주요한 해결 과제로 인식되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 시 다수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해야하는 어려움은 FTA 활용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관세청은 FTA 활용이 저조한 산업 및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지원을 위해 품목의 특성 및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 원산지지위를 쉽게 획득하고 확인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2종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먼저 2015년 농수축산물 생산 농가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구매확인서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한 국내 생산·인증·거래사실 관련 서류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대체 인정하여, 원산지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정부기관 발급 서류로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공급시 한국산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원산지(포괄)확인서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등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

더불어 2017년 주력 수출 품목인 공산품의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세번변경기준 특성을 이용하여 도입한 제도로 모든 투입원재료와 완성품의 세번이 상이하여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충족하는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은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시 제출 원산지증



서류를 「국내제조(포괄)확인서」1종으로 같음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

2. 주요내용 및 연혁

「원산지 간편인증제도」는 2015년 관세청 고시 제정을 통해 농산물 1,028개 품목에 대하여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등 5종의 정부기관 발급 서류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대체 인정하면서 도입되었다. 그 후 대상 품목 및 인정서류를 지속 발굴·지정하여 2022년 1,200개 품목대상 18개 인정서류로 확대되었다.

원산지 간편인증제도 품목 및 인정서류 지정 현황

제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2년	2023년
지정 품목	1,028개	1,113개	1,145개	1,146개	1,193개	1,200개	1,225개
신규 지정 품목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전통 식품	-	지역 특 산물	-	재활용 공산품
인정 서류	5종	13종	14종	14종	16종	18종	19종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체 인정서류 19종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⑪ 출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②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⑫ 출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③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등록증	⑬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판정확인서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⑤ 물김 구매확인서	⑮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⑥ 마른 김 구매확인서	⑯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서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⑰ 우수천일염인증서
⑧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증	⑱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⑨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⑲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⑩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최근 2023년 원산지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산업의 25개 물품과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서가 추가 지정되어 현재 1,225개 대상 품목에 대하여 19종의 서류가 원산지(포괄)확인서로 대체 인정되고 있다.

우수재활용제품인증이란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해당 품질인증기준으로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원산지 간편인증으로 추가된 우수재활용 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정제연료유,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등 총 25개 품목이다.

우수재활용제품(GR) 지정품목 25개

연번	분야	품목명	품질인증 기준번호	HS번호
1	폐식용류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GR M 2002	3402.50
2	폐유	정제연료유	GR M 2102	2710.12/ 2710.19
3	폐플라스틱	PMMA 재활용 MMA 유기복합물	GR M 3086	2916.14
4	폐요업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GR F 4031	6801.00/ 6802.00
5		성복도 및 뒷채움용 철강슬래그	GR F 4042	2619.00/ 2517.20
6	폐고무	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GR M 6001	4012.90
7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GR M 6020	3915.90
8		재활용 타이어 분말	GR M 6021	4004.00
9		인조잔디용 고무분말	GR M 6024	4004.00

연번	분야	품목명	품질인증 기준번호	HS번호
10	수산물가공 잔재물	패화석 비료	GR M 9005	0508.00/ 2825.90
11		공업용 탄산칼슘	GR M 9015	2836.50
12		패분	GR M 9016	0508.00/ 2825.90
13	유기성 폐기물	부산물 비료(퇴비)	GR M 9001	3101.00
14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GR M 9006	2309.90
15		사료용 어분	GR M 9008	2301.20
16		사료용 육골분	GR M 9010	0506.90
17		육분	GR M 9011	2301.10
18		혈분	GR M 9012	0511.99
19		사료용 유지	GR M 9017	1518.00
20	폐금속	폐알루미늄캔을 이용한 알루미늄 탈산제	GR D 0004	7601.20
21		PMMA 재활용 산화알루미늄	GR D 0007	2818.20
22	폐금속	재활용 인듐	GR D 0008	8112.92
23		재활용 주석	GR D 0009	8001.10
24		재활용 코발트	GR D 0010	8105.20
25		재활용 구리	GR D 0011	7403.19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통해 농수축산물물은 지속적 원산지증명 간소화 추진으로 원산지증명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주력 수출산업 및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간소화 지원은 미미하였으며,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필수 제출 서류인 원산지소명서 및 첨부서류 작성의 어려움은 FTA 활용기업 애로로 지속 작용하였다.

이에 2017년 관세청 고시를 개정하여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중 국내제조사실만으로 한국산 원산지지위가 충족되는 공산품에 대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대상물품 사례

주요 원재료		HS 코드	최종 제품
고무	천연고무	4001.10	 • HS 코드 : 제4011.10호 • 한-중 FTA PSR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모든 원재료의 4단위가 변경되어 국내에서 제조시 원산지 충족
	합성고무(SBR)	4002.11	
		4002.19	
고무배합약품	카본블랙(착색 등)	2803.00	
	프로세스 오일	2710.19	
	고무 노화방지제	3812.30	
	유황(가루제)	2503.00	
강력사 타이어 코드 직물	나일론 또는 폴리아미드제의 것	5902.10	
	폴리에스테르제의 것	5902.2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5902.90	
스틸 코드	스테인리스강의 선 (황동 도금)	7223.00	
	철강제 코드	7312.10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원산지증명 간소화 혜택은 관세청 고시상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다. 동제도 도입전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시 최대 13종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었으나, 2017년 첨부서류 종류가 「원산지소명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등 2종으로 축소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2022년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C/O 발급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혜택		
일반 수출물품 C/O 발급방식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대상물품 C/O 발급방식	
	2017년~2021년	2022년~현재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 수출신고필증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최대 12종* 등 * 제조공정도, BOM, 원재료 수불부 등 최대 12종	국내 제조사실 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	(좌동)
	(좌동)	(좌동)
	- 원산지소명서 1부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부 등 2종으로 축소	- 원산지소명서 제출생략, 국내제조 확인서 1종만 제출

* 관세제도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2의2

더불어 보다 폭넓은 산업(품목)에 원산지증명 간소화 혜택이 공여될 수 있도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는데 2017년 최초 161개 품목을 지정하여 제도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총 326개(HS 10단위 기준)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대상 품목 지정 현황

(단위 : 품목수)

구분	2017년	2019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지정 품목수	161	+82	+50	+24	+9	326

2024년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신규 지정품목

연번	HS 코드	HSK 품명	활용대상협정
1	2206.00-2010	청주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2	2206.00-2030	탁주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3	2209.00-1000	양조 식초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연번	HS 코드	HSK 품명	활용대상협정
4	2523.21-0000	백색 시멘트 (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5	5407.20-000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6	5801.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절단 코듀로이(corduroy)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7	5911.40-00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 (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8	6109.90-3010	인조섬유 티셔츠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9	6307.90-4020	보건용 마스크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3. 향후제도 확장가능성

관세청은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2종을 통해 FTA 활용 저조산업 및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애로를 경감시키고, FTA 활용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중고차 부품 수출시장 규모 확대 및 전기차 산업의 확산에 따라 폐배터리 재사용 논의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고품, 재사용, 재제조 물품의 원산지 간소화 제도 편입 및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

